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소 상 공 인 보 호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

3. 주요내용

가. 부실채권의 매각대상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 10조의3 제1~3호)

- 1)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적(국가) 채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채권 매입 기관을 근거 법률과 시행령 내 제한적으로 규정함
- 2)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4)과 동 시행령(제10조의3)에 명시된 부실 채권 기관 외 매각이 가능한 대상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
- 3)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외 매입기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
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의 이행을 위한 조치임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추진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에 제1호~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22에 따른 기업
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라목
에 따라 설립된 기관 등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부실채권 매각대상) 법 제22조의4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를 말한다.	제10조의3(부실채권 매각대상) 법 제22조의4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
1. <u>(신설)</u>	1. 「 <u>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u> 」 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
2. <u>(신설)</u>	2. 「 <u>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u> 」 제249조의 22에 따른 기업 재무안정 사모집합 투자기구
3. <u>(신설)</u>	3. 「 <u>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u> 」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 관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820